

PART 08

장기요양급여 사후관리



2022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 사례집

01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제한 시 사전에 급여제한 안내문을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급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02 인정조사 시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변경**

- 장기요양급여는 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로 인정되는 과정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거나 고의에 의한 사고발생 또는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간병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간병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간병비(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간병급여(공무원재해보상법) 수급권자는 월별 간병급여 등 수급가능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됩니다.

※ 산재간병급여 대상 중 보장구(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수동휠체어, 지팡이)를 지원받아 이용할 경우 노인장기요양 보험급여의 동일 복지용구는 내구 연한까지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04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에 따라 급여제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은 자기기여(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한 사회보험이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자기기여 없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로부터 급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부조입니다.

- 사회보험상의 급여가 우선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에서 신청 자격을 장기요양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대상자는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던 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인정유효기간 내에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05 장기요양급여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을 달리하여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법정기준보다 과다하게 수급한 경우 공단부담금을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급여내역을 확인하고 환수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의 하나로 장기요양급여사실확인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고 있으며, 수급자는 이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해당지사(운영센터)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내에 해당지사(운영센터)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급여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급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장기요양급여 사실확인서에 기술하고 증빙자료를 첨부

06 어떤 경우에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사실확인을 하나요?

- 복지용구 관련 수급자 부당이득
 - 복지용구 연간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연 한도액 적용기간 내에 산정개수 초과 수급한 경우, 시설급여 또는 병원입원 중에 이용한 경우, 장애인보조기 중복 수급한 경우
- 월 한도액 초과
 - 장기요양기관을 달리하여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 자격 상실 후 수급
 - 수급자의 자격상실 및 국외 출국 등 급여정지 기간에 급여를 이용한 경우
- 현물·현금 이중수급
 - 재가·시설급여와 현금 급여는 중복 이용할 수 없음에도 중복하여 이용한 경우

- 자격(감경)변동
 - 장기요양급여이용 중 의료급여자격 또는 감경자격을 소급 상실한 경우 등
- 가족요양비 부당이득
 - 가족요양비 지급(적용)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지급받은 경우

07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 각 지사(운영센터)에서는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발췌된 건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근거자료를 요청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0조(자료의 제출 등)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9조(과태료)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

장기요양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납부하나요?

- 장기요양 기타징수금은 표준OCR, 창구수납, 가상계좌, CD/ATM,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표준OCR: 영업시간 내에 금융기관 통합공과금 수납기기에 현금납부
 - 창구수납: 업무시간 내에 공단 창구에 신용카드 납부
 - 가상계좌: 연중무휴, 지사에 계좌번호 의뢰 후 창구 / 인터넷 뱅킹 / 폰뱅킹 / 자동화 기기를 통해 납부
 - CD / ATM: CD / ATM(현금자동화)기기 이용가능 시간에 계좌이체 납부
 - 인터넷지로·모바일 지로: 웹사이트(www.giro.or.kr) 또는 모바일지로 앱 실행 후, 납부고객용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회원가입) 후 사회보험료(통합징수보험료) “기타징수금 납부”- 고지서 앞면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신용카드 납부 가능)
 - 은행 인터넷 뱅킹: 은행 홈페이지(인터넷 뱅킹)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회원가입) 후 사회보험료(연금/보험료) “기타징수금 납부”- 고지서 앞면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09 휴·폐업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 신고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존기간 중인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휴업일 또는 폐업일(지정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36호 서식의 신청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분실 및 훼손 목록표와 함께 공단에 이관하여야 합니다.
 - 자료의 자체보관을 희망하는 휴업 기관은 휴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36호서식의 자체보관 신청서와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기관은 해당 자료에 대한 기록과 관리의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보존기간은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입니다.

1. 장기요양급여 계약에 관한 서류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방문간호지시서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분. 다만, 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분에 같음함

-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배상 책임보험 증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에 따른(별지 제22호~별지 제26호 서식)서식,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근무일지 및 그 외 이를 증빙하는 자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이관을 하지 않거나 장기요양급여제공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